

입법정책 정보

Legislation & Policy Information



최근 법령 정보

- 제 · 개정 법령
- 주요 판례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 참고할 타 시 · 도 조례

의정활동 정보

- 지방자치 네트워크 활동
- 주목할 타 시 · 도의회 동향
- 학계 동향

정책제언

정책연구를 통해 본 경북

시사정보

- 최신 이슈
- 시사 상식
- 읽어 볼 만한 책



최근 법령 정보

■ 제·개정 법령 03

- 시·도지사, 해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 03
- 시·도지사, 바둑 보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04

■ 주요 판례 05

-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일방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해당 / 05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07

-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수 없어 / 07
- 예산집행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 / 09

■ 참고할 타 시·도 조례 11

- 사회적 약자의 주거시설 개선 및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개시 / 11
- 해운항만사업 육성을 위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을 조례로 명시 / 12
- 보이스 피싱 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13
- 청년창업 및 영세상공인을 위한 공공상가주택 지원 정책 마련 / 14

의정활동 정보

■ 지방자치 네트워크 활동 15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공휴일” 지정 노력이 결실 맺어 / 15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15

■ 주목할 타 시·도의회 동향 1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교실 참가자 87%가 만족한다고 응답 / 16
- 충청북도의회,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대표단 방문 환영 / 16
- 전라북도의회,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 17
- 전라남도의회, 영호남 화합을 위한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 17

■ 학계 동향 18

-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되어야 / 18
-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는 분권화와 창조적 리더십에 영향을 받아 / 18
- 지역정책은 지역분권과 지역균형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달성되어야 / 19
-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향납세제가 도입되어야 / 19

정책제언

- 재천화재 참사의 교훈과 과제 / 20

정책연구를 통해 본 경북

- 농촌 활성화 및 전통 문화계승을 위해 체계적인 전통주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 / 22
- 경북 북부권은 시군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여야 / 24
- 교육훈련기관(사회복지분야)에 NSC 기반 교육과정 도입 필요 / 26
- 노인요양시설의 질 높은 서비스 위해 의료서비스와 연계 필요 / 28
-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높여야 / 30
- 경북지역 중소기업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마련 / 32

시사정보

■ 최신 이슈 34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과 향후과제 / 34

■ 시사 상식 37

- 비핵화와 핵폐기, “CVID”와 “PMD” / 37

■ 읽어 볼 만한 책 38

- 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 38
- 유니버시티 :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 38
-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 : 누가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 39
- 일연력 : 한마디로 상황을 올 킬하는 7가지 말기술 / 39

최근 법령 정보

■ 제·개정 법령

시·도지사, 해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4월 17일 제정, 2019년 4월 18일 시행

- » 해양과학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자원의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해양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광역 해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관리정책은 영해를 외측한계로 하는 좁은 해양관리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해양의 지속적인 이용·개발·보전 및 미래 수요를 고려한 과학적·통합적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 » 1999년 2월 8일 제정된 현행 「연안관리법」은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지 못하고, 과학적 평가기반이 부족하여 ‘연안용도해역제’를 이행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양 공간에서의 실질적 관리권한과 구체적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입법에 머물러 있었다.
- » 이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해양활동 등 해양자원 이용을 위한 수요에 대처하고, 「연안관리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유재로서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 및 미래 수요를 고려해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실질적인 관리범위에 포함시키는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를 반영한 선(先)계획 후(後)개발 체제로 관리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 이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공간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 마다 해양공간정보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시·도지사 소속의 해양공간관리지역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 »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 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장관 또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도지사, 바둑 보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바둑진흥법」, 2018년 4월 17일 제정, 2018년 10월 18일 시행

- »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민족이 즐겨왔던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인 바둑은 우리의 고유한 정신 가치체계를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바둑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생활 영위와 함께 교육적 측면에서 사고력을 키우고, 인성과 정서를 함양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치매예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취미활동으로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 » 그렇지만 국내 바둑 인구는 2010년 1천만 명에서 2015년 90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점차 낮아져서 바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바둑의 지속적 확산과 바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둑 보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바둑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 전문 인력의 양성 등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둑을 통한 국민여가 선용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의 함양과 함께 바둑의 세계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 » 이를 위해 「바둑진흥법」을 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바둑진흥의 기본계획, 바둑의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바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바둑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Ⅰ 주요 판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일방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해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및 제23조(2018. 5. 31. 헌재 2013헌바322 헌법불합치)

Q :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제1호에서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와 제23조 중 제11조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장소적 측면에서 제한한다.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의 정도가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이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화적 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민주 국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필수적 구성요소가 된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집회장소는 일반적으로 집회의 목적·내용과 밀접한 내적 연관관계를 가지며, 특별한 상징적 의미 또는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자유실질의 실질을 형성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국회는 국가 정책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의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한 보호로 한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회 부지의 경계지점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국회의 담장에서 국회의사당 이외의 국회시설까지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이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기능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해지는 집회, 국회 활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회’처럼 옥외집회로 인해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 대한 고려 없이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공익에 해당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전혀 없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문화재위원회에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법제처 2018. 3. 30.)

Q :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A :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로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지정·해제·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무형문화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무형문화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을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제1호),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제2호),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제3호),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또는 시·도지사에게 문화재 또는 무형문화재 관련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서 “시·도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형문화재법 제31조제1항에서 “시·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둔다”라고 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법상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그 설치 여부를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 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관련 법률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설치하는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무형문화재법」 제31조제2항 제3호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에 설치되는 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소관이 다른 문화재위원회 아래의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게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71조 및 「무형문화재법」 제31조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2017. 11. 28. 법률 제15065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정문화재(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수리·실측·설계·감리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14434호)

제31조(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산집행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

의원발의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가 가능한지(법제처 2018. 3. 12.)

Q : 지방의회의원의 발의로 “시·도지사는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A : 지방의회의원이 시·도지사에게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에 기초해 상호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조례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예산 집행을 강제함으로써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사무에 속하게 된 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자치사무의 예시로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의해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한 이를 의원발의의 자치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법과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실정에 맞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참전유공자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법제처 2009. 5. 22. 회신 09-0110 법령해석례)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이나 예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참전명예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책임을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서 시·도지사의 집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독립적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은 “상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권한 행사를 견제·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에게 예산의 집행을 강제하는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참고할 타 시·도 조례

사회적 약자의 주거시설 개선 및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개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5. 3.)

》 취 지

- 주거상황이 극히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립과 자활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주요 내용

- 서울시장은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시장 및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지원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맞도록 주택관리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제3조제3항).
- 서울시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4조).
- 서울시장은 지원주택공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6조).
- 서울시장 등은 지원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등 필요한 소요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원주택 내외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8조).
- 서울시장은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년 임기(한 차례 연임 가능)의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원주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3조).

》 시사점

- 통계청의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독거노인 가구비율은 10.9%로 전남(13.7%), 전북(13.7%)에 이어 전국 3번째이고, 노령화지수는 16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점차 거주여건이 취약한 도민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주택의 공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운항만사업 육성을 위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을 조례로 명시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사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 6. 17.)

» 취 지

- 해운항만사업 우수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항만사업 우수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운항만사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주요 내용

- 부산시장은 해운항만사업 기업 중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업무역량이 우수한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수리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제3조).
- 부산시장은 우수인증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우수기업은 문서·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제4조).
- 부산시장은 우수인증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경영컨설팅 및 해외시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6조).
- 부산시장은 우수기업 양성을 위해,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7조).
- 부산시장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
- 부산시장은 위탁사무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9조).

» 시사점

- 포항 영일만의 물동량은 2017년 3년 만에 10만 TEU를 처리하였고, 2018년도 1분기 물동량은 2만 6,450 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증가하는 등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선박관리업 등 관련 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인증기업 선정 등을 통한 육성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 피싱 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시행 2018. 4. 20.)

» 취 지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電氣通信金融詐欺) 또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1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2018년 3월 13일에는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고하여 계좌명의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 주요 내용

- 대전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
-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이를 위해 관련기관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5조).
- 대전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피해예방 교육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제6조).
- 대전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 대전지방경찰청장,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제7조).

» 시사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건수는 2013년 23,355건에서 2017년 50,013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피해액 또한 2013년 991억 원에서 2017년 2,43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금융정보에 어두운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년창업 및 영세상공인을 위한 공공상가주택 지원 정책 마련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 시행 2018. 5. 2.)

» 취 지

- 영세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이 전체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 창업의 꿈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에 한정됐던 공공임대정책을 확장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경기도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 경기도지사는 영세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3조).
- 경기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 정책 방향과 공공임대상가 공급이 주변 상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담은 공공임대상가 건설 및 공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 경기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의 임대기간을 최대 15년(최초 5년)으로 하고, 재건축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제6조).
- 경기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의원, 공공임대상가협회 대표, 관련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7조).
- 경기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 임차인들의 대표조직인 “공공임대상가협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제8조).

» 시사점

- 경상북도는 2018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875억 원을 투입하여 11개 분야 59개 시책에 청년 일자리 1만 1,000개, 청년고용률 4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이 밝힌 2017년 3분기 고용지표를 보면 경북의 청년실업률은 7.3%로 어려운 실적이다. 따라서 창업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의정활동 정보

■ 지방자치 네트워크 활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공휴일” 지정 노력이 결실 맺어

-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가 요구한 ‘지방공휴일’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지자체가 해당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 》 2017년 12월 제주도의회가 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공휴일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여 왔다. 정부가 제출하기로 한 이번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로 정하고,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 제주 4·3 희생자추념일처럼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대구의 2·28 의거 등 특정지역의 역사적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4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충청북도 청주에서 ‘2018년도 지방분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분권 담당, 시도지사협의회 담당, 홍보 담당 공무원 50여 명과 협의회 임직원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향후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 》 지방분권 마인드를 고취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선임연구위원이 ‘지방분권 개헌에 따른 지방정부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을,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 지방분권 관계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재테크 교양특강과 청남대 문화탐방 등이 진행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2018년에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함께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방분권에 필요한 전국적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주목할 타 시·도의회 동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교실 참가자 87%가 만족한다고 응답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상반기 의회교실을 마치면서,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 9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78%가 의회교실을 통해 시의회 및 시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증가’ 또는 ‘증가’했다는 응답을 해, 의회교실이 지방의회를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가장 유익하고 좋았던 프로그램으로는 ‘견학’ 참가자들의 49%가 ‘의회퀴즈’라고 답했고, ‘모의의회’ 참가자들의 63%는 ‘모의 본회의’를 들었다.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참여·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만화를 이용한 의회 소개 책자 제작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학생들에게 의회가 어려운 곳이 아닌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의회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충청북도의회,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대표단 방문 환영

- » 충청북도의회(의장 김양희)가 지난 3월 26일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한 일본 야마나시현(山梨県)의회 대표단을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충청북도의회와 야마나시현의회는 1992년 충청북도와 야마나시현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날 환영회에는 김양희 도의장과 임병운 운영위원장·정영수 교육위원장, 윤홍창 대변인, 이종욱·김학철 의원 등이 참석해 야마나시현의회 대표단 10여 명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 » 이날 환영식에서 야마나시현을 대표해 시라카베 켄이치 현의회 의장은 “이번 방문이 상호 간 이해와 신뢰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어 향후 양 의회가 미래지향적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양희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그동안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도의회와 야마나시현의회 간 상호 교류에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양 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상생협력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상호발전에 기대와 희망을 주는 돈독한 우호교류 관계로 진일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전라북도의회,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 » 전라북도의회(의장 양용모)는 지난 4월 25일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임성진 전주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토론으로는 국주영은 도의원, 김재호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 »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신기현 교수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의 경우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시대 변화에 맞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며 “의회직렬 신설 및 운용 등은 선거관리 위원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 과제로 의정활동 강화와 해외연수 개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투명성 보장, 정책보좌 인력 확대, 사무처에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앞서 양용모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자치에 주민참여, 시민사회 그리고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영호남 화합을 위한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 » 전라남도의회(의장 임명규)는 지난 5월 30일 전라남도과 경상북도의 초·중학생들을 초대해 ‘동서화합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기부터 영·호남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 이날 의회교실에 참여한 전남·경북 청소년들은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직접 선출하고 조례안 찬반토론, 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를 조례안과 자유발언 주제로 서로 의견을 나눠 더욱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졌다. 전라남도의회 임영주 사무처장은 “도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양질의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우리 지역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Ⅰ 학계 동향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되어야

전영옥(군산대 교수) 외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과정 연구”, 법학연구 제18권제1호(2018. 3.)

- 》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2004년 전라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지사의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하므로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비록 법률적 제도로 확립되지 않았지만,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같이 ‘임명권자 외 제3자의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공기업·출연기관장 등이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일정한 자격검증을 통해 적격자를 임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 》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대구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시·도별 도입운영사례 분석 결과 운영상 주요 쟁점은 크게 1.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의 범위, 2. 주관 위원회의 설정 문제, 3. 청문회 제출 서류의 범위, 4. 회의 공개의 범위 문제 등이다. 제도운영에 있어 부정적 측면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상기관의 선정과 검증 절차에서의 한계이다. 따라서 제도가 지니는 의의를 감안,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는 분권화와 창조적 리더십에 영향을 받아

차재권(부경대 교수) “지방정부와 국제정치: 다층거버넌스시대 지방정부의 대외관계”, 한국과국제정치 제13권제1호(2018. 3.)

- 》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촉발된 다층거버넌스(MLG: Multi-Level Governance)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정부 대외관계의 발전모형을 국가별 사례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MLG 활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국가별로 분류, 설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둘째, 구축한 MLG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MLG가 활발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MLG 운영 메커니즘의 특징을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셋째, MLG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이 각 국가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MLG 구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여기서 도출된 함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대외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 MLG 이론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개방형 분권제의 다층거버넌스(MLG) 유형에 속한 국가일수록 지방정부의 대외관계가 보다 활성화되고,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지역정책은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달성되어야

김순은(서울대 교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지방행정연구 제32권제1호(2018. 3.)

- 》 오랜 중앙집권체제로 인한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정책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서로 상이한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연구는 두 정책이 정책의 특성, 내용, 이론적 기초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내용별로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책의 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 두 정책의 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과제의 선택, 추진방식, 공간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이전재원 전략과 같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를 선택하고, 시·도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나 제안공모방식 등 다양한 추진방식을 도입하고, 전국을 3권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립하는 3분 전략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상시적·협력적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조화로운 합의점을 추구하는 것이 두 정책의 차별성을 축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향납세제가 도입되어야

이병산(대구대 교수) “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제1호(2018. 2.)

- 》 지방에서 대도시로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되면서 농어촌 지역경제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경기의 침체로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세수부족으로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의 제정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 이 연구는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고향납세에 따른 기부금에 국세(소득세)를 위주로 세액공제혜택의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를 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수령단체는 제한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의 용도(분야 및 사업)를 선택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는 모금된 기부금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 제언*

Ⅰ 제천화재 참사의 교훈과 과제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박동균 자문위원
현)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1. 1980년대 중반까지 완만히 증가하던 화재발생이 2004년 이후 3만 건 이상으로 증가

- 》 우리나라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화재발생 건수는 1987년 1만 건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2004년에는 3만 건 이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이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안전의식 미약, 복잡 다양한 생활환경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 과다사용 등에 따른 화재 유발인자의 노출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 》 최근 10년간 국내 대형화재를 보면, 2007년 2월에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보호시설 화재로 외국인이 10명 사망했고, 2008년 1월에는 경기도 이천 냉동 창고 화재로 40명이, 2009년 11월에는 부산 신창동 실내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외국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5명이 사망했다. 2014년 5월에는 전남 장성군 요양 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는 등 그동안 많은 화재사고가 있었다.
- 》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 창고(40명 사망) 화재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참사로 기록됐다. 제천화재 참사는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초기 소방 대응력의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적 재난이다.

2. 제천화재 참사에 대한 위기대응의 문제점을 근거로 위기정책과제 제시

- 》 첫째, 화재 등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동대응이다. 이는 철저히 훈련된 전문가의 상황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화재에 대응하는 현장지휘자인 소방서장들의 지휘능력이 절대적이다. 일선 소방서장들의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선 소방관들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다. 소방인력 증원과 더불어 소방관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이 한층 더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 둘째, 제천화재 참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이유에는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던 차량들도 큰 원인이다. 현재는 소방구조 활동 중에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소방관 개인이 변상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파악한 소방관 개인 변상건수는 20건이며, 변상금액도 1,732만원에

* 본란의 의견은 도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달했다(뉴스핌, 2018. 1. 17). 이는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방관들이 적극적인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손실보상) 소송의 상대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소방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관에게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면 된다. 또한 소방관뿐만 아니라 소방 활동에 나선 주민들이 주차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견인차는 없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차고지증명제, 학교 운동장 개방 등의 실질적인 정책의 연계 및 확대가 필요하다. 위기관리는 어느 한 부서나 한 기관이 처리할 수는 없고,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방차가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다양한 행정기관과 주민의 정책 및 협조가 필수적이다.
- 》 셋째, 현재 우리나라 목욕탕과 찜질방 같은 다중이용업소 내부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소방본부가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충청북도 내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 건축물 115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58%인 67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상시 점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불법적인 요소의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이 소방 안전관리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조사해서 수시로 컨설팅을 해주고, 상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즉 단속과 컨설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가연성 건축 자재를 교체하고, 안전시설을 잘 갖춘 건물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안전은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확산시켜야 한다.
- 》 넷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으로 전국 소방공무원의 현장인력은 32,000여 명으로 법정 기준 51,714명보다 19,254명(37%) 부족하다. 현장인력의 지역별 편차도 크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소방공무원은 더욱 부족하다. 제천의 소방인력 충원율은 법정 기준의 47%에 불과하다.
- 》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위기관리 및 대응을 위해서는 사전대비 측면에서 인력과 더불어 장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책연구를 통해 본 경북

농촌 활성화 및 전통 문화계승을 위해 체계적인 전통주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

대구경북연구원 채종현 부연구위원, 『경북 지역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 2017.

1. 전통주 산업육성은 건전한 술 문화 정착과 음주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 ≫ 국내 주류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통주 시장은 정체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주 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R&D 투자 및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등 성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엄격한 규제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
- ≫ 전통주 산업의 육성은 농가소득향상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소비 측면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약주, 과실주 등 다양한 저도주의 생산과 가양주 문화의 재건으로 건전한 술 문화 정착과 음주사고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 ≫ 이 연구는 경북 지역 전통주 산업 현장의 상세한 실태를 파악하고,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전통주 제조업체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전통주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수요를 늘리는 것이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이다.

- ≫ 전통주의 원료나 제조방법 등은 일반주류와 다르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법 조항에 근거하여 제조 허가를 받은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농민주)를 전통주로 보고 일반주류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통주에 대한 시장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품질 검사 주기 강화, HACCP 적용 대상 확대, 세울 경감 수량 규정, 출고가 기준 과세제도, 특정주류도매업의 판로 제한, 종가세 등 전통주 생산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 ≫ 2015년 지역별 전통주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의 민속주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전통주 생산액은 전국 대비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을 전통주 생산의 주산지라고 할 수는 없다. 경북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민속주 안동소주’, ‘김천 과하주’, ‘문경주조’, ‘명품안동소주’, ‘오미나라’, ‘영천 We와이너리’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 ≫ 경북 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경북 전통주 소비시장 확대, 경북 전통주 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특산주 다양화 및 품질 관리, 주류 관련 규제 대응 및 완화 추진 등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전통주에

대한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해결방안은 전통주의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다. 결국 전통주의 범위를 벗어나 한류, 한식이라는 보다 큰 영역에서 어떻게 전통주를 부각할지 고민해야 한다.

3.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적극 육성해야 한다.

- ≫ 경북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주 산업의 비전을 설정하고 전통주 사업체 유형별로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북 전통주 산업은 주류 시장의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하는가? 경북 전통주의 장점은 무엇이고 대상 소비자들은 누구인가 등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 전통주 제조업체의 특성에 따라 목표와 전략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유형별 차이를 고려해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안동소주와 같은 중대규모 민속주 제조업체는 지역농업과의 연계, 볼거리와 먹을거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명소로서 지역 내 파급효과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반면 김천 과하주와 같은 소규모 민속주 제조업체는 사업지속을 위한 고정비 지원과 후계자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 경북 전통주 육성 생태계 정비를 위한 전통주 전문기관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통주 관련 인력 육성과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청년농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청년층이 농기뿐만 아니라 전통주 기업 등 식품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통주 유통 기반 강화를 위해 경북 전통주 물류 센터 건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홍보 마케팅과 관련하여 볼거리+먹거리+전통주까지 연계한 통합적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통주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대도시 식당과의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문화적 자산으로 전통주를 바라보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주 품질관리를 위한 주종별 사업자 단체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별로 품질관리규약을 만들어 일부 무임승차자들로 인한 품질하락 및 명성 약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 ≫ 다양한 지역 특산주 개발 및 발굴을 위하여 지역 특산주 연구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지역 내 지역 특산주 업체와 공동으로 원료 확보, R&D, 마케팅·홍보, 품질관리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판로 확대를 유도하도록 지역 공동사업화에 지원해야 한다.

경북 북부권은 시군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여야

대구경북연구원 김종표 연구위원 외, 『경북 북부권 네트워크 도시체계분석 기초연구』, 2017.

1. 경북 북부권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발전 필요

- 》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도시 및 지역 분야에서도 ‘융합’과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다. 도시정책 측면에서 기존 거점도시 육성방안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등장한 중소도시 네트워크형 개발방안은 대규모 거점도시가 입지하지 못한 지역에서 기능적으로 분산된 중·소규모 도시들을 연계·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하는 것이다.
- 》 경북 북부지역은 백두대간, 유교문화 등 자연·문화관광자원과 함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경북 북부권의 중소도시들이 축소도시 현상에 적응하고, 개별도시 자체발전과 함께 인접도시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경북 북부권 중소도시의 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해 개별도시 차원의 발전과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한 광역권 차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안동시, 영주시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

- 》 경북 북부권의 네트워크 구조를 도시위계, 네트워크 강도, 네트워크 흐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도시위계는 안동시, 영주시가 경북 북부권 8개 시군 중에서 수위도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기능의 경우, 의성군의 도시위계가 높게 분석되었다. 직장,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은 8개 시군 중에서 최상위계층 시군 중 하나로 분석되었고 업무기능 등에서는 차상위계층 시군으로 나타났다.
- 》 네트워크 강도는 크게 안동시와 영주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로 구분된다. 안동시는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영주시는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인접 시군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문경시, 영주시는 제천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문경시는 상주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 》 경북 북부권 8개 시군의 네트워크 위계를 살펴보면, 직장은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이 높았고, 업무, 주거, 여가 및 오락 등의 기능은 안동시, 영주시가 높았다. 교육기능은 안동시,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업무, 주거, 여가 및 오락기능 등은 안동시와 영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등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육 기능은 안동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러한 경북 북부권 중소도시 네트워크 여건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소도시 자체 중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군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도시권을 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넷째,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광역교통네트워크 정비가 필요하다.

3. 도시기능 특성화, 광역거버넌스 구축, 도청신도시기능 강화 등 추진

- ≫ 경북 북부권 시·군들은 고유한 도시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시 본래의 기능을 특성화해야 한다. 직장 및 업무 기능, 주거기능, 교육기능, 여가오락 기능, 상업 및 서비스 기능 등을 도시특성에 맞추어 특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별도시별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발전전략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추진하여 경제 및 산업, 문화관광, 정주, 환경 등 도시기능을 차별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역사문화 및 생명산업(안동), 경량소재 및 한방바이오(영주), 스포츠 및 농업 6차 산업화(문경), 세포배양 및 반려동물(의성), 곤충산업(예천) 등이다.
- ≫ 광역대도시권 형성을 위해서는 광역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1차적으로 시급 도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2~3개 중소도시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차적으로 소그룹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권들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연합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광역거버넌스의 운영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존 구축된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광역발전계획'과 같은 공동발전계획 수립, 도시기능의 분담, 공동사업 추진 등 도시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 ≫ 도청신도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시 규모 확장과 함께 도시기능 특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도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광역대도시권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도시발전에서 기존 인프라를 공유하고, 도시기능의 차별화를 통해 권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 경북 북부권이 하나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국도와 지방도를 활용하고 일부 구간의 연결성을 제고하여 경북 북부권 환상형 순환교통망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사회복지분야)에 NSC 기반 교육과정 도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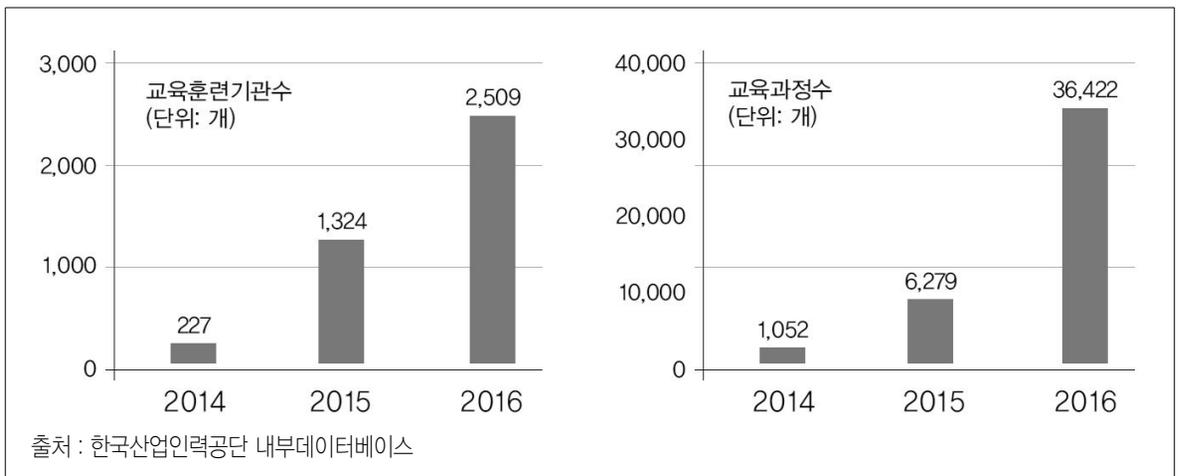
경북행복재단 정상기 연구원 외,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2017.

- ≫ 정부는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질 높은 교육훈련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은 학문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출처 : 『자격기본법』 제2조).

- ≫ NCS기반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수는 2016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1〉 연도별 NCS기반 교육훈련 변화

- ≫ 사회복지분야는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과 재직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내 교육훈련기관들은 아직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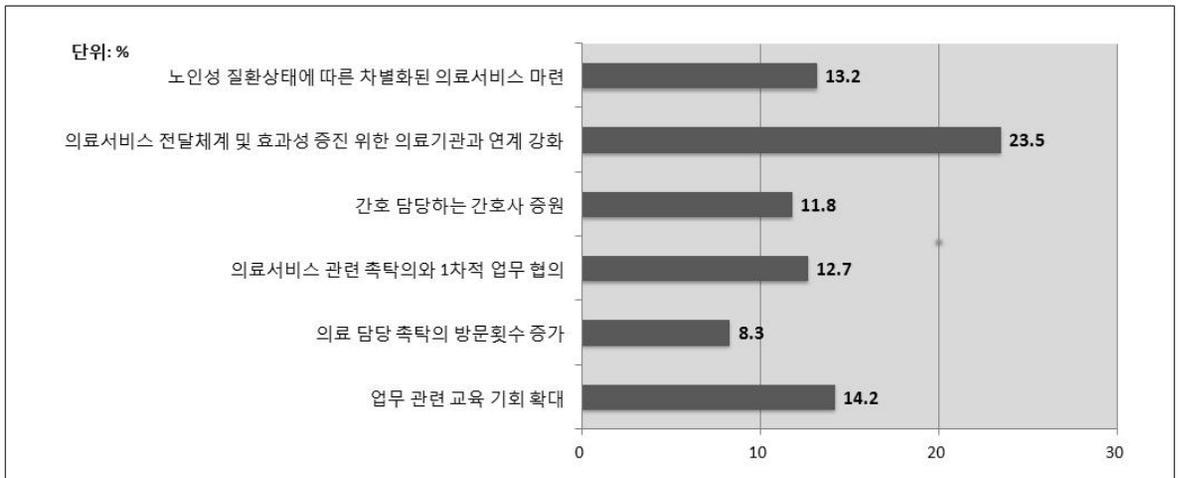
- 》 이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 NCS기반 교육수요를 분석하고, 경북도 내 교육훈련기관에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고에서는 교육수요 분석결과에 초점을 두고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사회복지현장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향상에 초점을 두고 교육수요를 분석하였다. 둘째, 24개 NCS분류체계 중 '07. 사회복지·종교(대분류)'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도내 NCS기반 교육훈련기관 수가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신규 교육훈련기관 입장에서 교육수요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 분야 NCS기반 교육수요 분석은 도내 100명의 사회복지 시설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설문 회수율 : 96%).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복지관(3종 : 장애인, 노인, 지역 사회)의 행정팀장, 사례관리팀장, 지역사회활센터의 실장,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 장애인생활시설의 사무국장,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무국장이다.
- 》 설문분석 결과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95.8%), NCS에서 추구하고 있는 업무능력 향상(48.9%)이 외부교육의 주요 참여 목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훈련기관에서 홍보 시 내부적으로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37.5%)하고, 외부적으로는 교육 안내문(교육 참여 요청 공문 등)을 팩스로 전송하는 것(27.1%)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일주일 중 금요일(54.2%) 오후(81.3%)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정부지원 교육(NCS 등)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으나(63.5%), 직접 정부지원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낮은 것(21.2%)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에 정부지원 교육 도입이 필요한 시점(70.9%)이며, 경북도 내 NCS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된다면 직접 참여하거나 직원에게 참여를 권유할 의향이 매우 높은 것(94.8%)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NCS 능력단위 중 가장 교육수요(N=96)가 높은 과목은 '① 사회복지 사업기획', '② 사회복지조직 재무관리', '③ 사회복지조직 인사관리', '④ 사회복지조직 직원 역량개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의 예상보다 참여의향은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NCS기반 교육과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 경북도 내 교육훈련기관의 사업방향 설정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 NCS 능력단위의 중요도, 난이도, 활용 빈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노인요양시설의 질 높은 서비스 위해 의료서비스와 연계 필요

경북행복재단 강민정 선임연구위원 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연계실태 및 개선방안』, 2017.

-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의료 및 복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포괄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되어 시행 9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연계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내 의료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240곳 모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FGI(초점집단면접)를 실시하였다.
- 》 설문조사 결과, 시설의 간호 인력으로서 업무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이 요구되어 심리적 부담감이 큰 경우”가 6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의료적 조치가 더 필요한 입소자에 대해 충분한 의료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 “돌발 상황 및 응급 상황 대처 능력 부족” 등의 순이었다. 시설 내 응급의료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곳은 87.7%이었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곳은 12.3%(25개소)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노인요양시설 내의 의사의 부재, 간호사 인력 부족,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부족 등이었다.
- 》 노인요양시설 10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촉탁의가 활동하고 있었고, 촉탁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61.3%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 》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라는 응답이 2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업무 관련 교육기회 확대”가 14.2%, “노인성 질환 상태에 따른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마련”이 13.2%, “의료서비스 관련 촉탁의와 1차적 업무 협의”가 12.7%,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 증원”이 11.8%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2).
-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FGI 결과를 종합하면, 시설 내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간호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하여 시설 내 인력부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 » 시설 내 응급의료 매뉴얼은 응급 시 1차로 내원하는 병원에 대한 내용과 1차적으로 119 구급대 이송 요청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의료연계 매뉴얼 역시 협약의료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골자로 연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약을 통해 시설 내 의료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 노인요양시설의 간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숙련된 간호 및 요양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직원의 처우개선이,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복무 중인 남자 간호사 활용방안이, 시설 내 간호사 채용이 어려울 경우 간호조무사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시설에서 입소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입소자 관리를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첫째, 노인요양시설과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체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치의 제도를 제안한다. 둘째, 노인요양시설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응급의료 매뉴얼을 구축하고, 지역의 119안전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확보 방안으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유휴 간호사 활용,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보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정보 공유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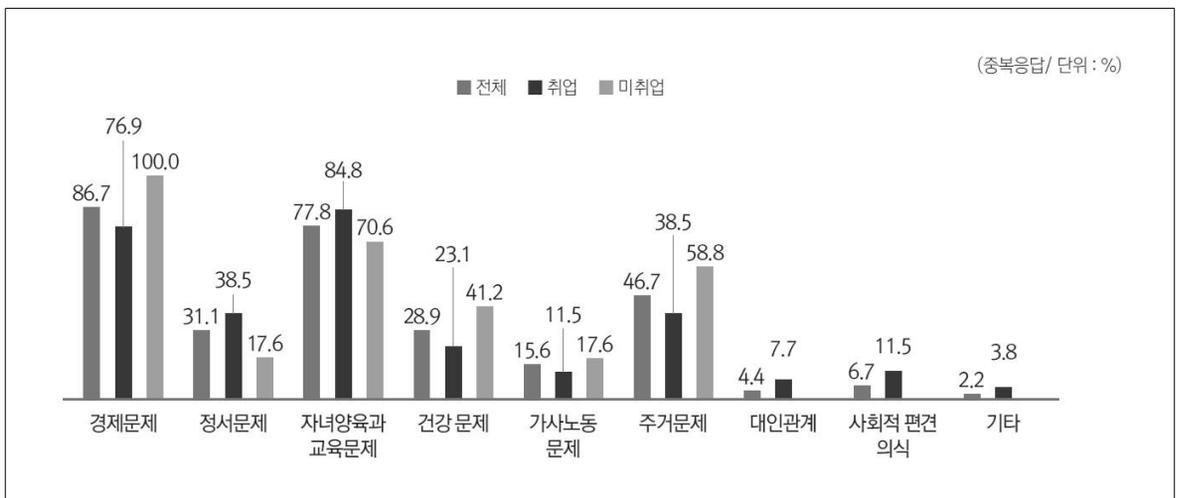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높여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진혜민 연구위원, 『가족 내 돌봄노동 위기와 지원방안』, 2017.

- »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8.6%였지만 2010년 9.2%, 2016년 9.6%로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경북의 경우도 2005년 6.73%였지만 2010년 7.73%, 2016년 9.37%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돌봄의 사회화로 돌봄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돌봄자의 부담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사 및 양육, 경제활동의 전담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놓여 있다.
- » 이에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담당자,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부모가족 자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1.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서비스

- »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문제(86.7%)가 가장 많았고, 자녀양육과 교육문제(77.8%), 주거문제(46.7%), 정서문제(31.1%), 건강문제(28.9%), 가사노동문제(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미취업 한부모가족은 경제문제를 손꼽았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크게 양육 및 교육지원, 자립지원,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서비스 정보제공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돌봄지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자녀돌봄지원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양육비, 교육비를 폭넓게 지원해주시기를 원하였고, 특히 미취학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있어 본인부담금 감소와 긴급 자녀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교육비 부담이 커 이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부모가족 자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돌봄서비스 확대 절실

» 한부모가족 자립과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공무원, 교수, 연구자, 기관 대표) 27명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였다. 모자가족, 부자가족의 복합가중치 및 순위 종합 결과, 자녀돌봄서비스 지원 확대가 1순위, 일·가정 양립제도 우선 적용이 2순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3. 한부모가족 자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자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양육 및 돌봄서비스 내실화 및 확대, 지원 체계 마련, 한부모가족 취·창업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및 홍보 강화를 제안하였다.

[한부모가족 자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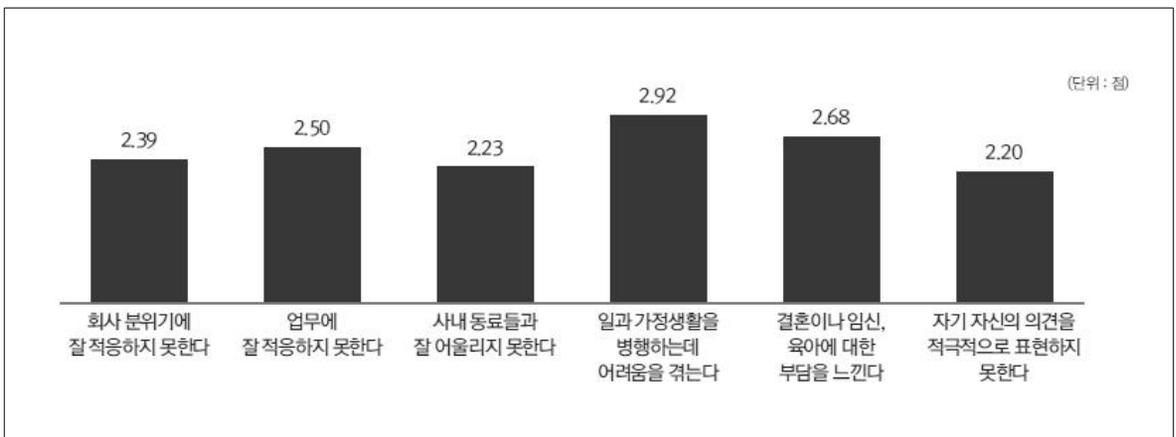
정책방향	내 용	구 분		비 고
양육 및 돌봄서비스 내실화 및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활용 시간 확대 및 자부담비용 경감	기존	중기	
	한부모가족 위기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	기존	중기	
	한부모가족 자녀 안전 지원을 위한 홈 CCTV 지원	신규	단기	
	아동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추가 지원	신규	중기	
지원체계 마련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신규	장기	
	한부모가족지원 전담기관 역할 확대	기존	중기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매년 수립, 조례 제5조에 의거)	기존	단기	경북도, 칠곡군 해당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정 확대	신규	단기	22개 시군
한부모가족 취·창업 지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신규	중기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서비스(직업교육훈련+취업)	기존	단기	취·창업 기관 연계
프로그램 강화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확대	기존	단기	
홍보 강화	경북 한부모가족 지원 매뉴얼 개발	신규	단기	

경북지역 중소기업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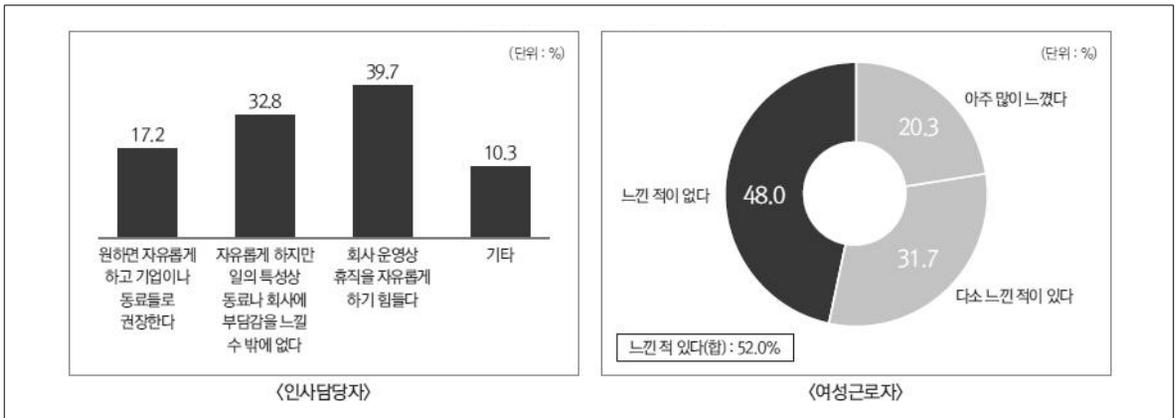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배옥현 연구위원, 『중소기업여성 경력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2017.

- 》 2017년 현재 경북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2.9%로 전국 평균(52.7%)에 비해 약간 더 높지만, 남성(75.8%)에 비해서는 22.9%p라는 큰 격차가 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 여성경력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적절히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이들 기업에서 여성경력유지 관련 제도 및 일·가정양립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 》 이에 도내 중소기업 60여 곳의 인사담당자 및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여성경력유지를 위한 제도·정책의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여성근로자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담당자는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 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별로 없다'(평균 2.20점~2.92점/5점 만점)는 태도를 보인 반면, 임신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여성근로자가 휴직을 하는 것에 대한 직장 내 분위기는 '회사 운영상 휴직을 자유롭게 하기 힘들다'(39.7%)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근로자 역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 휴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부담감을 느끼는 층이 5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여성이 직장생활 시 겪는 어려움(인사담당자 응답)]



[임신,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감]



- 》 한편, 여성경력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욕구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평균 4.05점 ~ 4.60점/5점 만점)가 높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낮게 나타나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에 대해 기업은 적극적인 고용개선 노력, 제도 활용이 가능한 기업분위기 조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 중소기업여성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과제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들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정책과제	내 용
가칭 '경상북도 일·가정양립센터' 설치·운영	인사담당자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격차 해소 및 기업 CEO 마인드 제고를 위한 가칭 '경상북도 일·가정양립센터' 설치·운영
'노사분쟁협의회' 활용 독려	노사 양측의 공동이익을 높이기 위한 회의와 협력을 통한 노사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노사분쟁 협의회 활용 독려
기업과 근로자 측면에서 미스매칭 되는 제도 점검 및 현실화	기업의 제도 실시율이나 향후 제도 도입률이 근로자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 점검 및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
제도 실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 철저 및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적극 검토
근로자의 연령대별, 기업 실정에 적합한 복지제도 운영 강화	20, 30대는 육아휴직 등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분위기 조성, 30대는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대, 40대는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50대 이상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지원과 출/퇴근시간 유연화로 나타남.
가칭 '경상북도 대체인력통합뱅크' 구축·운영	광역새로일하기센터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선호도 조사를 해서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 인력풀을 확보·교육하여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연계·지원함.
중소기업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발굴·확산 및 실질적인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의 우수사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벤치마킹하여 직원 복지가 향상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관심을 적극 환기시키며 아울러 공모대회를 통해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

시사정보

■ 최신 이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과 향후과제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연구관), 「이슈와논점」 제1468호, 2018년 6월 1일.

≫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나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의회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영적자가 크게 늘면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지방의회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없이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의회 지침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적 미비 상황에서 운영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둘러싼 법적 공방】

- ≫ 지방의회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번번이 좌절되었다. 전라북도의회는 2003년 7월 25일에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조례안」을 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였고, 도지사는 동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원안을 재의결해 조례안을 공포했으나,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단체장이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조례는 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하므로 법령 위반이라고 보았다.
- ≫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2012년 4월 30일에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 운영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 조례에 대해 시장은 상위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고, 의회가 이를 원안 그대로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제소했다.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조례와 비슷한 이유를 들어 무효판결을 내렸다.
- ≫ 전라북도의회는 2014년 9월 30일 의장 직권으로 「전라북도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공포했다. 도지사는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없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 이를 제소하였고,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이 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선고하였다.
- ≫ 세 사건의 판례에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의 내용은 다소 상이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사유는 유사하였다. 현행 법령은 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률상 단체장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을 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지방자치법」 제22조).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제한하는 유효한 조례의 제정 요건으로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운영현황 】

- 》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11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방식을 선택한 충남도의회를 제외한 10개 광역의회(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는 사전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였다. 그 외 6개 광역의회(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북, 경남)는 관련 제도가 없었다. 현재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사청문회는 제주도의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 》 제주도는 부지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2014년에 도입한 행정시장 및 공기업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다. 인천과 대전은 의회 운영지침이나 예규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은 정무부시장, 대전은 4개 공기업사장·이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 》 집행부와의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광역의회는 7개(서울,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이다. 서울시는 5개 지방공기업, 대구시는 4개 지방공기업과 1개 의료원, 광주시는 8개 산하기관, 경기도는 6개 공공기관, 강원도는 6개 산하기관, 전남은 5개 공공기관, 경북은 5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 향후 입법과제 및 정책과제 】

- 》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은 표와 같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대상과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지방공사·공단 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 공기업 일부개정안」이 3건(김광수의원안, 황주홍의원안, 박대찬의원안) 발의되어 있다.

-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해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운영방식 등 상세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정해야 한다. 우선, 지방의회별로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인사들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검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대표적인 낙마사유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이다. 향후 공정성 시비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사 청문회의 운영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의 실효성은 대상자의 직무 능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후보자의 업무적격성이나 정책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하는 인사청문회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후보자의 검증방식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법안(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지방의회법안 (전현희 의원, 2018. 2. 8.)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고, 대상·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52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황주홍 의원, 2017. 7. 21.)		상임위원회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 청문을 실시함(안 제58조의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	김광수 의원 (2018. 2. 8.)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 전 인사청문을 거침,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58조제3항 및 제4항).
	황주홍 의원 (2017. 9. 5.)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 전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안 제58조제3항).
	박대찬 의원 (2016. 7. 27.)	지자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고, 절차와 운영 등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58조제9항 및 제10항).

Ⅰ 시사 상식

비핵화와 핵폐기, “CVID”와 “PVID”

- 》 “비핵화”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으로 핵확산의 반대의미를 가진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비핵국가이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경우에도 통설은 핵의 평화적 이용에 해당하여 비핵화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원전의 보유를 핵무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000MW(메가와트)급의 원자로가 1년에 약 500파운드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원자폭탄 1기를 만드는 데 약 10파운드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약 50기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전을 보유한 나라는 사실상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 “일본은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 “핵폐기”는 원자로 내의 핵물질인 플루토늄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플루토늄을 만드는 원자로를 현 상태에 멈추게 하는 단계를 ‘동결’이라고 한다. 이후에 ‘폐기’는 원자로 입구를 막아 기술자의 접근 및 관리를 막는 것이며, ‘불능’은 핵시설을 다시는 가동할 수 없도록 영구 폐쇄하고, 핵심장치인 노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 》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말한다. 이는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핵폐기 이후 검증단계를 가질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원칙이다. 미국은 2003년 진행된 제1차 6자회담 이후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CVID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 》 “PVID,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는 영구적이며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말한다. 2018년 5월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임식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기존의 CVID 대신 PVID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CVID보다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는 용어로 여기지고 있지만, CVID와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비핵화(Nuclear Disarmament)
핵군축을 위한 캠페인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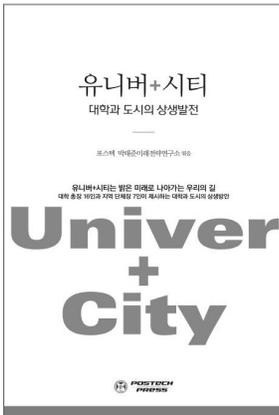
읽어 볼 만한 책



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정희윤, 하민지 지음 | 서울연구원 펴냄 | 201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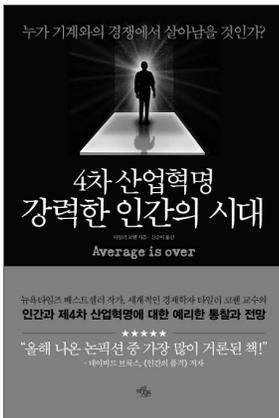
지방자치에 대한 기존의 학술서나 이론서가 만족시키지 못했던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형식으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현장 사례 중심으로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모두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에서는 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이 되는지 등을 소개했다. 2부 '지방분권을 향한 서울의 입장과 협치'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의 협치를 강조하며 현재의 협치 수준을 진단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사례와 해결 방안 등을 담았다. 3부에서 5부까지는 각각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에 대해 다루었다.



유니버+시티 :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엮음 | 포항공과대학교 출판부 펴냄 | 2017. 10.

2016년 12월 3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그동안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2016년 상반기부터 우리가 나아가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전략연구총서 제8권으로 『유니버+시티Univer+City :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출간하였다. 제1부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 유니버+시티는 우리의 미래」에서는 세계 각국의 대학이 도시와의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사례중심으로 제시하고, 상생을 위해 의식·리더십·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제2부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 지금 우리는 이렇게」는 대학 총장과 시장들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전통에 기반해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상생협력의 중요한 성공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 : 누가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타일러 코웬 지음, 신승미 옮김 | 마일스톤 펴냄 | 2018. 1.

저자인 타일러 코웬(Tyler Cowen)은 조지메이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이코노믹스> 선정 '1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1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요 저서는 <거대한 침체>, <경제학 패러독스>, <정보탐식가의 시대> 등이 있다.

이 책에서 코웬은 기계기능이 대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퍼센트 대 99퍼센트로 나뉘는 극단적 양극화가 아니라, '평균'으로 대변되는 중간층이 사라진 양극화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미래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이 아니라, 기계지능이 '어떤' 사람을 대체할 것이고, 기계혁명에 적응하는 사람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전망에 따르면 기계 지능과 결합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니, 인간 사회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이 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일언력 : 한마디로 상황을 올 꺾는 7가지 말기술

가와카미 데스야 지음, 안예은 옮김 | 쌤앤파커스 펴냄 | 2018. 1.

저자인 가와카미 데스야(川上 徹也)는 '이야기의 힘'을 마케팅에 도입해 '스토리 브랜딩' 분야를 개척한 장본인으로 도요타, 산토리, KDDI 등 50여 기업의 광고를 만들었다. 주요 저서로 <물건을 파는 바보>, <잘 팔리는 한줄 카피> 등이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고 축약해서 본질을 꿰뚫는 한마디로 구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러한 능력을 '일언력'이라 명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본질만 남기는 요약력, 한마디로 승부하는 단언력,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력, 예리하게 받아치는 단답력, 좋은 이름을 만드는 명명력, 촌철살인의 비유를 하는 비유력, 마음을 사로잡는 한마디를 구사하는 기치력으로 설명한다.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러한 일언력만 있다면 한마디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능력을 키워, 스스로의 존재감을 높이고, 호감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입법정책 정보

Legislation & Policy Information

입법 정책 정보

제10대 의회 제16호

(통권 제28호)

발행인 경상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부의장 편집인 입법정책관 이복영
발행일 2018. 6. 발행처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편집 및 교정 입법정책관실 ☎ 054)880-5066